

'96. 1. 18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개발위원회 소관)

제 천 시

##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총괄) (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계	완료	추진중	시기미도래	조치불능	비고
계	47	13	32	1	1	
농정과	7	2	4	1	-	
원예유통과	4	1	3	-	-	
축산과	3	-	3	-	-	
산림과	5	-	5	-	-	
건설과	5	-	5	-	-	
도시과	2	1	1	-	-	
지적과	1	-	-	-	1	
녹지과	2	1	1	-	-	
건축과	3	-	3	-	-	
수도과	2	1	1	-	-	
보건소	2	2	-	-	-	
지도소	3	-	3	-	-	
상수도상업소	3	2	1	-	-	
제천위생환경	2	-	2	-	-	
공영개발사업소	3	3	-	-	-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농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산 석공예특산단지 사업선정 부적정</li> <li>◦ 식육가공 사업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사업자 선정 부적정</li> <li>◦ 부실 운영으로 사업효과 미흡 및 행정지도 감독 소홀</li> <li>◦ 조합 구성원 자격 불합리</li> <li>◦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년도 선정된 계속 사업으로 대상자 변경 불가하며 이후 대상지 선정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선정하겠습</li> <li>◦ '92 - '95년까지 계속 시설중이며 '96년 완공예정으로 준공후 특산품 생산 추진토록 하여 농외소득에 기여 토록 하겠습</li> <li>◦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법인 등록 조합으로서 이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li> <li>◦ '96 시운전 가동후 지역 돼지사육농가와 연계한 원료 수급과 생산품 판로 대책에 적극 노력하여 농가실질소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li> </ul>	<p>추진중</p> <p>추진중</p>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농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시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일환으로만 운영되어 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재편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조 규정에 의거 구성 인원 및 위원 자격이 정해져 있음</li> <li>○ 재편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간 : '96. 1 - 2월</li> <li>인 원 : 35 명</li> <li>방 법 : 읍.면.동장 및 각과.유관 기관 단체 추천을 받아 전문성(실무자급)있는 사람으로 재편성</li> </ul> </li> <li>○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회 : 분기 1회</li> <li>임사회 : 수시</li> </ul> </li> </ul>	추진중

# '95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차 요 구	조 차 계 획	비 고
농 정 과	<p>[시 정]</p> <p>○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미흡</p>	<p>○가뭄우심지구에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중 1개소를선정 청풍대류지역의 대형관정 설치사업의 현장을 확인한결과 관정이 가동되지않았음</p>	<p>○ 조 차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규명 — 시설업체</li> <li>· 원 인 — 한전전주의 변압기 고장</li> <li>· 조치내용 — 한전에신고 변압기 교체</li> </ul>	완 료
	<p>○농촌 보안등 보수 관리 부적정</p>	<p>○농촌보안등 유지비를 등당40,000원으로 책정 마을별 개발위원장에게 자금을전도 보수케하는것은 유지비도 현실과 맞지 않게 책정되었으며 관리체계와 전문성 결여및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음</p>	<p>○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농촌및도시의 가로.보안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있게운영</p> <p>○ 현 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 촌 보 안 등 : 농정과</li> <li>· 도시가로.보안등 : 도시과</li> </ul> <p>○ 개 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도시과에서 일괄관리 &gt;</li> <li>· 부품별 보수관리체계 개선</li> <li>· 자금집행을 읍.면에서 일괄관리</li> <li>· 지역별로 수선업체지정 위탁관리</li> </ul>	완 료
	<p>[ 건 의 ]</p> <p>○문화마을 조성사업 분양가의 적정책정 및 분양에따른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택지가 미분양되는 일이없도록하고 농촌을위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분양계획을 '96년 4월까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p>	<p>○ 문화마을 조성사업시 분양가의 적정책정 및 분양에따른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택지가 미분양되는 일이없도록하고 농촌을위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분양계획을 '96년 4월까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p>	<p>○ 분양에따른 사전홍보활동강화 제반법규절차 및 분양지침에 의하여 세부계획을 조기수립이행</p> <p>(홍보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차 : 건물및토지편입자와면관내 거주 농촌주민</li> <li>· 2 차 : 면 외지역(시관내)</li> </ul>	시기 미도래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10 정 과</p>			<p>(홍 보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마을 조성의 배경과 취지</li> <li>· 희망대상 자격기준</li> <li>· 희망절차</li> <li>· 희망방법 등</li> </ul> <p>(홍 보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문 (면관내)</li> <li>· 반상회계재 등</li> </ul>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농 정 과		<p>○ 각종 지원사업(보조 및 융자) 대상자 선정시 대상농가 신청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사업의 수혜자를 넓히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시에도 농어민단체 또는 다수농민이 참여토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또한 보조 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 운영실적을 수시 점검, 감독하여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알찬 농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p>	<p>○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 농림수산부훈령 제834호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사업신청을 받아 예산신청하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 조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함</li> <li>◦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 안내문발송등</li> <li>- 신문게재, 반회보게제</li> <li>- 관련공무원 현지지도</li> </ul> </li> <li>◦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훈령에 의거 책임부여</li> <li>- 부진사업자, 부진시군은 예산삭감</li> </ul> </li> </ul>	추진중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고
원에유봉과	제천약초세계명품화사업 추진 미흡	<p>· 제천약초세계명품화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금성약초가공공장이 대부분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구입하여 가공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 약초재배 농가를 보호하고 소득향상을 위반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크게 어긋나고 있음.</p>	<p>· 금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초가공공장의 95년도 약초구입 가공한 물량은 황기 8톤, 당귀 15톤, 숙지황(소탕)으로 23톤 정도이며, 구입량의 50% 정도는 제천시관내에서 원료구입을 하였고 품귀 또는 부족물량에 대하여는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 가공원료 구입한 바 차후 집차적으로 인근 관내에서 재배되는 약초원료를 구입하여 가공판매토록 유도하겠으며, 금성면에 약초작목반을 육성하여 자체생산 및 계약재배 방안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 주력하겠음.</p>	추진중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비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운용에 있어 불요불급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기발생된 불용액은 추가 예산편성시 재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예산편성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li> </ul>	완료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비고
<p>원에유통과</p>	<p>· 농목산물대형직판장 공사가 당초 설계보다 17백만원이 증액 설계변경되어 추진되고있는바 기간내 완공은 물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공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p>	<p>· '95년 9월 기초작업(터파기)공사중 판매장 부지가 연탄재등으로 매립되어 지반이 약하여 하자발생이 우려되므로 기초보강공사로 설계변경으로 증액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감리와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과 관리로 준공하여 판매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중</p>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전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비고
원에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지원사업(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시 대상농가 신청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사업의 수혜자를 넓히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시에도 농어민단체 또는 다수농민이 참여토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한 보조융자사업에 대한 사업 운영실적을 수시 점검 감독하여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알찬 농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물사업신청 요령에 의거 농가 신청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정토록 하고 농어민단체와 다수농민이 참여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다수농민의 확대지원에 참고하겠음.</li> <li>· 각종 보조, 융자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수시점검, 지도토록 노력하겠음.</li> </ul>	추진중

##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축산과	각종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p>○ 한우,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이 사업명만 달리하여 동일농가에 중복지원되고 있어 사업효과 저하와 타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는바 추후 사업대상농가 선정시 중복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p>	<p>○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은 농림수산부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용자,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한우, 젖소경쟁력제고 사업은 농가 1인당 2억까지 지원할수 있으며 경쟁력 제고사업명이 세부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 (예: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등) 동일 농가에서 중복 지원된것으로 사료되으나 사업의 효과 및 전업농육성을 위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p>	추진중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위원회 운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사업 신청농가 우선순위 결정등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년1회 개최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이 알차게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또한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바 농어촌 발전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으로 신뢰받는 축산행정이 되도록 하기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농가 선정은 소액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며 전업농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을 준수하여 축산농가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li> <li>○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제52조 및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농업전문인 및 농어민대표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li> <li>○ 본 심의위원회는 농정업무주관과인 농정과에서 심위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li> <li>○ 96년도 심의위원회 재구성시 축산전문가를 위촉토록하여 축산사업지원 심의시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li> </ul>	추진중

실시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p>○ 산재되어 있는 판내 축산 농가를 지역별로 가능한한 집단화하여 축산오폐수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나아가 오폐수처리 및 기술 지원, 판매유통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발하시기 바랍니다.</p>		<p>○ 축산농가의 신규 또는 전업농 농가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제투자 할 경우 지역내에서 집단화될수 있도록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p> <p>○ 축산오폐수 처리에 대한 허가, 신고등 규제대상농가는 축산 폐수처리 지원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신청농가는 전수 지원되고 있음)</p> <p>○ 축산오폐수처리시설 및 축산물 판매유통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개발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음</p>	<p>각 22 장</p>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산 림 과	피재골 단풍나무 조림 사업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3년도 식재한 단풍나무 3,100본 활착율 50% 내외로 사업실적이 부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는 녹지과 업무로 해당과에 보식 및 사후관리 계획에 편성토록 하겠음</li> </ul>	추진중
	덤굴제거사업 대상 사업지 선정 부적절 및 사업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덤굴제거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보호림이나 조림지역을 선정치 않고 잡목지 선정으로 사업 효과 거망치 못하였고, 불성실한 사업시행으로 덩굴제거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만 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 52220 - 1207 ('95.12. 6)호로 '98. 4.30일까지 재작업 시행토록 보완지시 하였으며</li> <li>향후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철저한 사업실행으로 덩굴제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li> </ul>	추진중
	조림지 사후관리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도리 87-1번지 조림 9.5ha중 약 6.0ha의 조림지를 확인한 결과 조림지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림목의 활착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극히 부진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7년 조림대상지로 결정 재조림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li> </ul>	추진중
	운제로 사업확정 부적절 및 사후관리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도리 87-1번지 임야의 경우 급경사지로 운제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운제로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우기시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며 인근 농가에 피해가 심각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6 순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복구 사업지로 혁정 설계 완료되었으며 사업추진중</li> </ul>	추진중
	조림사업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종검신허가와 임목벌채허가 실시후 조림사업지로 선정 2,100주의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던 고명 산 2,3번지의 경우 사후관리 감독 소홀로 현재 과수원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우기시 인근 주택가에 피해로 지역민의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으며 조림사업으로 부자됨 예산낭비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보식계획 수립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li> </ul>	추진중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건의사항)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건설과	<p>직원복무감독 소홀</p> <p>노점상 관리상태 미흡</p> <p>사업발주상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근무를 하는 수로원들의 복무감독이 형식에 치우쳐 근무상태가 심히 불량(민원및 여론제기)하며 작업량에 따른 인력 조정이 요망됨</li> <li>○ 노점상 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노점점포 첩거현황이 감사자료 제출과 불일치함. 따라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여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li>○ 동일업체가 경쟁입찰 수의계약 하도급등 여러건의 사업을 동일시기에 발주하므로 자재수급등의 지남으로 부실공사 우려,</li> <li>○ 해당부서에서의 감독기능 강화가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시 대처를 위해 대기실에서 항상 대기는 물론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li> </ul> <table border="1" data-bbox="1274 581 1675 763"> <tr> <td></td> <td>당초</td> <td>첩거</td> <td>현존</td> </tr> <tr> <td>동문</td> <td>99</td> <td>46</td> <td>53</td> </tr> <tr> <td>용두, 마늘</td> <td>152</td> <td>80</td> <td>72</td> </tr> <tr> <td>중앙</td> <td>102</td> <td>9</td> <td>93</td> </tr> <tr> <td>계</td> <td>353</td> <td>135</td> <td>218</td> </tr> </table> <p>위 노점상관리 현황과 현지 노점상 현황과 이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노점상관리 및 운영실태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발주된 사업에 대하여 명에 감독제를 도입 감독에 철저를</li> </ul>		당초	첩거	현존	동문	99	46	53	용두, 마늘	152	80	72	중앙	102	9	93	계	353	135	218	<p>추진중</p> <p>추진중</p> <p>추진중</p>
	당초	첩거	현존																					
동문	99	46	53																					
용두, 마늘	152	80	72																					
중앙	102	9	93																					
계	353	135	218																					

실과소별	지 적 내 용(건의사항)	조 치 요 구	조 치 제 획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의 인도 경계석을 낮추어서 장애인 및 자전거 통행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적극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의 상수도 개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이 시내 다수 산재되어 있는바 철저히 조사하여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사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설치된 횡단보도의 인도 경계석을 낮추는 것은 시재정이 불허하여 불가하나 금후 횡단보도 설치시부터는 인도경계석을 낮추어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음</li>   <li>○ 제천시 미불용지는 총 1,418 필지 126,500 평 600여억원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년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li> </ul>	<p>추진중</p> <p>추진중</p>

#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도 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운용에 있어 불요불급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기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재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li> <li>○ 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의 인도 경계석을 낮추어서 장애인 및 자전거 통행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적극검토 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편성시 불용예산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음</li> <li>○ 추후 공사시 적극 검토 하겠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관 료</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권 중</p>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지 적 과	시민생활 안정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조례 제정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제정	①부동산 중개업법 제23조의2 (중개수수료및 실비의한도 등) 제3항에 의거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징구가 가능한 사항임.  ②'95.5.26.충청북도 조례2198 호에 의거 개정된 사항임.  ③위 ①②항에의거 중개수수료 요율은 도 조례에 의한 개정 사항으로 시군조례제정 및 개정은 불가능한 사항임	조치불능 (도 조례 개정사항) 관련법규 참조

# 不動產仲介業法令

1994

建設部



# 충청북도

우 (360-765)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전화 (0431) 220-2351 / 담당 : 황승훈

문서번호: 지적 58573 - 343  
 시행일자: 1995. 5. 26. (01)  
 수신: 네 01 - 12  
 참조: 지적 재무(세정)과장

신청	시각	지	지
검	일자	결	부
사	시간	내	서
인	1995. 5. 26	공	장
처	인도	공	안
리	454	공	장
과	지정	공	장
장	과	공	장
발	시	공	장
자	상	공	장

## 지 적 : 충청북도 부동산증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홍보

1. 충청북도 부동산증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된 내용을 별첨과 같이 홍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라며,
2. 부동산증개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증개업자는 증개수수료율표를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거나 은닉하여 게시하는 사례가 다소 있는 바 증개의뢰인이 요율을 몰라서 수수료율 과다 지불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3. 아울러 증개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증개수수료율표 미게시 증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증개수수료 초과징수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두어 불법, 부당증개 수수료징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부 : 충청북도 부동산증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부. 글.

충청북도지사  
 지적과장전걸

중정부드외부의 외걸출 받은 중정부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외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본 이에 공표한다.

중정부드지사

1995년 5월 26일



**중정부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외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중정부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외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20조 제3항"을 "제20조 제3항 및 중정부드정규칙 제23조의2 제1항"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부동산중개수수료

종류	기	격	가	액	수수료율	한	도	액
권 속 권 관	5년	관	미	관	0.9%			35,000원 이내
	5년	관	관	관	0.7%			50,000원 이내
	3년	관	관	관	0.6%			150,000원 이내
	3년	관	관	관	0.5%			200,000원 이내
	5년	관	관	관	0.4%			300,000원 이내
	1년	관	관	관	0.3%			500,000원 이내
	5년	관	관	관	0.25%			800,000원 이내
	4년	관	관	관	0.2%			1,200,000원 이내
부 속 권 관	8년	관	관	관	0.15%			
	1년	관	관	관	0.8%			7,000원 이내
	1년	관	관	관	0.7%			30,000원 이내
	3년	관	관	관	0.6%			50,000원 이내
	1년	관	관	관	0.5%			120,000원 이내
	3년	관	관	관	0.4%			150,000원 이내
	5년	관	관	관	0.3%			250,000원 이내
	1년	관	관	관	0.25%			400,000원 이내
부 속 권 관	2년	관	관	관	0.2%			600,000원 이내
	4년	관	관	관	0.15%			

- ※ 1. 승계수수료는 처분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은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2. 종전의 경우였던 전세금원금, 임대차인 경우였던 임대차금원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차인 종세의 경우에는 원금부족금 (한달원세액×정액기간 해당월수)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건의 내용	건의 요구	조치 계획	비 고
녹지과	<p>모든예산 운영에 있어 불용불급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기 발생된 불용액은 추가 예산 편성시 재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p>예산 편성시 세심한 주의 및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p>	완료
	<p>의림지 숲발공원 보호사업 및 노송관리를 위하여 매년 서울나무종합병원 외 2개소의 전문기관에 의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바 임업직 공무원 중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노송관리 기술을 습득시켜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을 절감 알뜰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노송 보호사업시 공사감독 임업직 공무원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보호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효과 거양</p>	추진중

##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각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건축과 (건축계)	건축물 부설주치장 운영 및 점검 미흡	건축물부설주치장 점검 시 미작동으로 위반된 실적을 현지 점검 한바 감시자료에는 시정하였 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 하고 주치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건축물부설주차 장 운영 점검이 미흡함	제1차 :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제2차 :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사용 중지등 행정 조치	추 신 중
건축과 (주택계)		<p style="text-align: center;">건의사항</p> 1. 건축위원회 심의시 도시 발전및 도심지미관을 지 해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역 실상을 최대한 감안하여 건축심의가 되어 전문심 의 위원회로써의 기능을 심분 발휘할수 있도록 위 원회 운영진반을 재조정 하여 철저를기하고 건축 위원회 위원선임시 위원 자격과 자질등을 중점은 식하여위원회 구성에 만 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 건립시 감리 부서 감독을 철저히하여 건본 주택의 공개내용과 실제시공이 상이한 관계 로 인한 집단민원이 아 기 되는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기하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96 .1.21일 만료되므로 각분야 및 전문 가로 재편성하여 도시 발전 및 미관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 위원회 운영해나갈 계획임.  2. 공동주택 (아파트및연립) 사업승 인을 득한 건축물이 9건 4,508세대 에 이르고 있으나임주지 모집공고후 모델하우스 (건본주택)를 항상 개방 하고있는 상태이며 철거시에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으 면서 인제라도 임주지들이 요구하면 보여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가별 로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 사 방지에 철저를 기 하겠음.	추 건 중

#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개 획	비 고
과 과 목 개 )	동현동 일동아파트 건축허가 부적정	요 구 사 항 - 동현동 109번지에 지상 5층으로 건축허가된 후 3개월이 지난뒤 지상 15층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과정에서 과선교 설치로 인한 동철기 도로결빙과 인근 농업고등학교 학업지장 초래등의 사유로 주민 반발이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승인한데 대하여 정단반원 발생이 심히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일동아파트 사업 계획 변경승인시 농업고등학교 학업지장 어부에 대하여는 학교장의동의를 득하여 시행된 것이며 - 동철기 과선교결빙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엄화칼슘 및 재사용 모래등을 준비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음	조 치 중

## '95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조치 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수 도 과	수도요금징수 업무 소홀	'95. 10월 현재 재천시수도요금 체납액이 2,441건에 70,021천원이며 고액체납자가 64건에 15,791천원으로 이는 상수도 제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특별징수대책 강구	○ '95 상수도 사용료 징수 현황 • 조징액 : 1,903,098천원 • 징수액 : 1,871,454천원 • 체납액 : 29,643천원 • 징수율 : 98.3%  ○ 조치계획 • 체납액징수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징수율 98.3%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 강구로 (단수조치등)체납액 일소토록 하겠음	추진 중

## '95 행정사무감사결과건의사항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수 도 과	예산 불용액처리 미흡	예산운용에 있어 불요불급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에 기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예산편성시 재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상수도 각종공사 입찰치역을 진액 추경 예산에 재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료

## '95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건의사항	조치요구	조치계획	비고
보건소	<p>○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의료장비 구입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알뜰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구입시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lt; 차후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시 가능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토록 하겠음 &gt;</p>	업무추진시 참고
	<p>○ 날로 확대되는 보건소 이용민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 인력 확보와 의사 및 보조원 등의 인력을 이용객들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직진단을 실시 적의 적절한 인력배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p>		<p>○ 현재 제천시지방공무원 조례에 규정된 보건소 정원상 현재 결원자가 없어 당분간 약사인력 채용은 어렵고 추후 결원시 검토하겠으며</p> <p>○ 적절한 인력배치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의 편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음.</p> <p>&lt;보건소에 진료실을 2개실로 운영해 오다가 동절기부터 이용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95년 12월 중순부터 진료실을 3개실&lt;일반 공중보건(2명), 의무과장(1명)&gt;로 나누어 진료를 실시하고 있음 &gt;</p>	원료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농촌지도소	<p>&lt; 건 의 사 항 &gt;</p> <p>○ 무기동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효과가 커 권장 사업이나 일부지역에만 집중 지원</p> <p>○ 토종별 군락지조성 시범사업 - 분봉미흡 - 양벌피해</p>	<p>- 확대지원 방안 강구</p> <p>- 토종별 사양기술지도 철저 - 토종별 군락지 표시안내판 설치</p>	<p>- 금후 예산반영 지역별 적지 에 지원 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제고</p> <p>- 토종별 사양농가 수사방문 기술지도 및 연시교육</p> <p>- 토종별 군락지역선정 고시 · 행정과 협의 의뢰 추진</p> <p>- 군락지역으로 고시전이라도 안내판 표시토록 행정과 협의 추진</p>	<p>추진 중</p> <p>추진 중</p>
	<p>&lt; 시정처리요구사항 &gt;</p> <p>○ 민간에대한 자본이전보조사업 (만물재래증 새우양식시범사업) - 사업자 선정 부적정 - 사육장 시설 미흡및 관리 감독 소홀</p>	<p>- 추후 보조사업의 선정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사업계획 사전 홍보 강화 · 사업적격자 엄선 · 사육장 관리 지도 보완 · 주1회 이상 지도사 능가 방문 지도</p>	<p>추진 중</p>

#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적내용	조치요구	조치계획	비고
상수도사업소	1. 수질시험약품 구입 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시험약품 구입시 약품 가격 조사를 하지 않고 가격 정보지의 가격보다 고단가로 책정구매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li> <li>추후 수질시험약품 구입시 시장가격조사를 철저히하고 구입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시험약품 구입시 가격 정보지(가격정보,종합물가정보, 유통물가)를 통한 물가정보와 시장물가 동향을 토대로하여 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싼가격으로 구입한품목이 일부있으나, 앞으로 약품 구입시에는 각종 정보지를 통한 물가정보 수집은 물론 인근 시.군의 시장물가 조사를 거쳐 집행함으로써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 하겠음.</li> </ul>	추진중
	2. 업무일지작성 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주요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측면과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부서임을 감안하여 담당 근무자별로 업무지시 및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의 작성사항이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일지 서식을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요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와 업무지시 및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li> <li>※ 참조 : 개선된 근무일지 (붙임 : 1)</li> </ul>	완료

※ 비고란에 완료, 추진중, 시기미도래, 조치불능으로 구분기재

#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적내용	건의사항	조치계획	비고
상수도사업소	<p align="center">&lt; 공통 사항 &gt; 각과·사업소 공통사항</p>	<p>· 모든 예산운용에 있어 불요 불급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기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예산시 재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p>· 철저한 자금운영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으로 불용 예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예산시 재편성토록 조치하겠음.</p>	<p align="center">산로</p>

※ 비고란에 완료, 추진중, 시기미도래, 조치불능으로 구분기재

근 무 자			문 서 처리상황	장 비 인 수 인 계				
직	성 명	인		• 가스총 : 정 (상태 : ) • 인계자 : 직 성명 ① • 인수자 : 직 성명 ①				
점검시각 및 점검자			점 검 사 항					
구 분	시 각	성 명	서류·장비상태	청소상태	소동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최종퇴청자								
근무자확인								
지시받은사항			조치결과					

○ 기계가동 및 점검사항

동 력 기 명	가 동 시 간	일 가 동	월 누 계	가 동 상 태	비 고				
염 소 루 입 기	~	시간	시간						
약 품 루 입 기	~								
역 세 칫 1 호 기	~								
역 세 칫 2 호 기	~								
역 세 칫 현 황	호 지 별	1 호 지	2 호 지	3 호 지	4 호 지	5 호 지	6 호 지	계	
	당 일								
	월 누 계								
필 요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모 터 기 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가 동 및 소 음 상 태					베 어 링 윤 활 유 상 태			
	베 어 링 및 윤 활 유					이 음, 이 취, 진 동 상 태			
	흡 입 및 토 출 압 력 계					모 터 온 도 상 승 상 태			
	냉 각 수 공 급 상 태					기 계 실 청 소 상 태			
	축 소 온 도 상 승 상 태					배 관 상 태			



## 95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

심각사별 결과고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위생환경 사업소</p>	<p>방류수 수질검사전처</p> <p>※건의사항</p> <p>분뇨처리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비처리 물량 대책</p>	<p>○원주지방환경청 수질검사 결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자체 수질검사 결과의 상이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검사방법 개선으로 신뢰성 회복 대책</p>	<p>○ 원주지방환경청 수질검사</p> <p>— 전자검출장비로 교체</p> <p>○ 현 위생환경사업소 실험장비 정비 (수작업 실험결과)로 양기관 검사 수치 상이</p> <p>— 점차적 구입계획을 수립하여관할 관청과의 실험장비 격차해소</p> <p>○ 하수 - 분뇨 연계처리 방안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중</p> <p>○ 연계처리시 재천서 분뇨발생 전량 적기에 처리 하여 민원발생 해소</p>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중</p> <p style="text-align: center;">추경간</p>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지 적 내 용	조 치 요 구	조 치 계 획	비 고
공영개발사업소	<p>청전2택지 분양 미흡. 미분양 택지에 대한 분양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마무 리 되도록 노력 강구</p>		<p>○ 분양촉진대책 시행</p> <p>1) 분양대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양조건 완화 —— 1년간 5회 분할 납부, 할부이자 미부리 (96. 1. 1시행)</p> <p>2) 분양 홍보물 제작 배부등 홍보활동 강화 —— 각 읍면동 및 기관 단체등 (1,000 부)</p>	완 료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건의내용	조치요구	조치계획	비고
공영개발사업소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세심한 주의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예산 감액 조치</li> <li>95. 2회 추경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조치 하였음.</li> <li>※ 불용예산 감액</li> <li style="padding-left: 20px;">: 10,895,422 천원 (95. 12. 21)</li> </ul>	완료

##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과소별	건의내용	조치요구	조치계획	비고
공영개발사업소	지방재정력 제고 및 내실있는 사업소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공영개발사업을 적극 모색 개발하여 사업소 본연의 입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개발사업소가 '96년도에 폐지되므로 새로운 사업은 모색치 않고, '95년도 본소에서 발의한 「신월 대학촌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li> <li>○ '95년도에 준공된 청전(2)택지의 분양 마무리등 정리업무 전담.</li> </ul>	완료